
2026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안)

2026. 10.

전남대학교

I 목적

학생은 관련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산업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며, 실습기업(관)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산업현장에서 응용하도록 경험을 제공하여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II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 의무를 준수한 실습기업(관)에 한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

III 추진일정

*필수 참고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운영 내용		일정(기간)	세부 내용
실습기업(관) 신청기간		~ 10. 26.(월)	- 현장실습 프로그램(http://cwes.jnu.ac.kr)에 기업 등록 후 참여신청서 및 교육계획서 입력 - 기간이후 신청희망기업은 현장실습담당자에게 문의
학생 신청기간		2026. 10. 27.(화) ~ 11. 10.(화)	- 현장실습 프로그램(http://cwes.jnu.ac.kr)에 신청 - 온라인 승인된 기업 중에서 1~3지망 선택
실습기업(관) 학생선발	1지망	2026. 11. 10.(화) ~ 11. 11.(수)	- 실습기업(관)은 개별 면접전형을 걸쳐 지원자의 합불 여부를 온라인상에 표시하고 합격자에게 유선 통보 및 안내
	2지망	2026. 11. 11.(수) ~ 11. 12.(목)	
	3지망	2026. 11. 13.(금)	
현장실습은 정규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필수 기간 엄수 (신청기간 외 별도 수강신청 불가)			
수강신청 (필수)	수강신청기간 확인 후 수강신청 (전남대학교 학사일정 참조)	- 해당 기간에 수강신청 ※ 수강신청 미신청 시 현장실습 불가 - 학사과 공지 (2026 전남대학교 학사일정 안내) 학사일정 반드시 확인	
수강료납부	납부기간 확인 후 납부	- 학사과 학사일정 반드시 확인 ※ 수강료 미납 시 수강신청 취소, 재수강신청 불가	
오리엔테이션 및 인성교육(예정)	2026. 12. 16.(수) 14:00(예정)	-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 - 현장실습 관련 서류 작성 안내	
실습인원 통보 및 협약서 작성	2026. 12. 21.(월) ~	- 실습기업(관), 학생, 대학 간 협약 체결(기업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협약 체결)	

운영 내용	일정(기간)	세부 내용
산재보험 가입기간	2026. 12. 28.(월) ~ 2027. 01. 04.(월)	- 현장실습 실습기업(관)은 실습생에 대한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현장실습 기간 ※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인정 하되, 출근일수 산정시 제외	2026. 12. 28.(월) ~ 2027. 01. 22.(금)	- 4주 과정(20일) / 2학점 - 실습생과 협의후 실습일수 연장가능 - 실질 근무 20일(주말, 공휴일 반영)
	2026. 12. 28.(월) ~ 2027. 02. 23.(화)	- 8주 과정(40일) / 5학점 - 실습생과 협의후 실습일수 연장가능 - 실질 근무 39일(주말, 공휴일, 연차 반영)
현장방문 지도점검 (예정)	2027. 01. 05.(화) ~ 2027. 01. 19.(화)	- 관련학과 학부(과)장, 관련학과 교수, 관련학과 조교 - 실습기업(관)을 방문해 실습생 격려 및 실습환경, 실습내용 확인

IV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개설교과목

구분	실습기간	과정	교과목명	과목코드	학점	비고
계절제	2026. 12. 28.(월) ~ 2027. 01. 22.(금)	4주	현장실습1	UNV4008	2학점	※동일 교과목 재수강 불가 ※ 일부 전공선택 현장실습과정은 해당학과 사무실에 문의
			현장실습7	UNV4011		
			현장실습12	UNV4016		
			현장실습13	UNV4017		
	2026. 12. 28.(월) ~ 2027. 02. 23.(화)	8주	현장실습4	UNV4006	5학점	
			현장실습5	UNV4007		
			현장실습8	UNV4012		
			현장실습9	UNV4013		

- 교과구분: 일반선택(일선)
- 이수방법
 - 최대 3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 성적평가는 S(Success) / U(Unsuccess)로 평가함
 - 성적평가는 실습 일수 이외 실습과정 불성실(기업 담당자 평가 50점 이하)에 대한 사유는 학점 인정 불가함
 - 현장실습 학점은 졸업을 위한 이수 학점에 포함되며, 일반선택으로 인정함

☐ 현장실습 참여대상

- 교과목 수강 및 학점 부여에 문제가 없는 3, 4학년 재학생
- 졸업유예, 초과학점 대상자 * 현장실습담당자에게 문의
- 1~2학년, 휴학생 신청불가
- * 2027년 2월졸업예정자 8주과정 불가(졸업사정기간 성적산출 불가사항에 해당)

☐ 실습기업(관) 참여 기준

-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5인 이상 기업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습생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 적용 시 참여 가능)
-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 그밖에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학과장 등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기업 등 국내외 산업체 및 연구기관

☐ 실습기업(관) 제외 대상

- 잔디 깎는 사람, 판매원, 학습지 교사,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편의점, 주유소, 차량 정비, 경비, 정비, 건물/주차관리, 목욕탕관리, 청소용역, 홀서빙 등 공장이 없는 소규모 업체 및 실습 취지에 부적합한 기업
- 실습을 통하여 단순 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업체, 3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실습학생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업체

☐ 실습운영 시간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학교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1조 1항

□ 실습기업(관)의 의무

- 현장실습교육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
- 실습기간의 일부기간이 2026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년도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시간 및 최저임금(2027년 최저시급(10,700원)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

▶ 2027학년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산출 표

기간 (출근 일수)	6시간(월157시간)		7시간(월183시간)		8시간(월209시간)	
	100%	75%	100%	75%	100%	75%
1개월 (20일 이상)	1,679,900원	1,259,920원	1,958,100원	1,468,570원	2,236,300원	1,677,220원
2개월 (40일 이상)	3,359,800원	2,519,840원	3,916,200원	2,937,150원	4,472,600원	3,354,450원
3개월 (60일 이상)	5,039,700원	3,779,760원	5,874,300원	4,405,720원	6,708,900원	5,031,670원
3개월 3주 (75일 이상)	6,299,625원	4,724,719원	7,342,875원	5,507,156원	8,386,125원	6,289,594원
4개월 2주 (90일 이상)	7,559,550원	5,669,663원	8,811,450원	6,608,588원	10,063,350원	7,547,513원

▶ 2027학년도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산출 표

기간 (출근 일수)	6시간			7시간			8시간		
	70%	60%	50%	70%	60%	50%	70%	60%	50%
1개월 (20일 이상)	1,175,930원	1,007,940원	839,950원	1,370,670원	1,174,860원	979,050원	1,565,410원	1,341,780원	1,118,150원
2개월 (40일 이상)	2,351,860원	2,015,880원	1,679,900원	2,741,340원	2,349,720원	1,958,100원	3,130,820원	2,683,560원	2,236,300원
3개월 (60일 이상)	3,527,790원	3,023,820원	2,519,840원	4,112,010원	3,524,580원	2,937,150원	4,696,230원	4,025,340원	3,354,450원
3개월 3주 (75일 이상)	4,409,738원	3,779,775원	3,149,813원	5,140,013원	4,405,725원	3,671,438원	5,870,288원	5,031,675원	4,193,063원
4개월 2주 (90일 이상)	5,291,685원	4,535,730원	3,779,775원	6,168,015원	5,286,870원	4,405,725원	7,044,345원	6,038,010원	5,031,675원

▶ 2027학년도 실습지원비 산출 계산 예시

- 1일 8시간, 주5일,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되는 표준현장실습의 경우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일 실습시간수

ex) (8시간/1일) × (5일/1주) + 8시간 = 48시간/주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ex) (4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6.86시간/1일) × (30.42일/월) ≒ 209시간/월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1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4. 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ex) 2026년 최저임금 기준 (10,320/시간) 적용 시

→ (209시간/월) × (0.75) × (10,320/시간) = 1,617,660/월 (약 162만원)

ex) 2027년 최저임금 기준 (10,700/시간) 적용 시

→ (209시간/월) × (0.75) × (10,700원/시간) = 1,677,220/월 (약 168만원)

▶ 무급현장실습 운영 조건(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조건)

- 관련근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 25조 4항 근거

① 전공 관련성 (필요성, 환경 및 여건)	② 수업요건 구비	③ 학업 성취 제공	④ 학생 유익성
⑤ 일상 업무 금지	⑥ 간접 체험 형태 운영	⑦ 학생의 사전 동의	⑧ 단기간 내 단시간 운영

※ ⑤, ⑥의 요건에 대한 학교의 명확한 확인이 수반되어야 해당 무급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동의하에 가능

- ▶ 무급현장실습은 교육시간 100%, 1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실습기간은 2개월 이하 운영

□ 학교 지원사항

○ 학생 지원

- 학생 상해보험 가입
- 학생 숙박비 지원 및 교통비 지원(단, 실습기업에서 숙박이 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숙박비: 1인 기준 1개월 최대 250,000원
 - 교통비: 1인 기준 1개월 최대 60,000원
 - 제출서류 모두 구비 후 신청,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급 불가
 - 현장실습 실습일이 해당 월의 말일 종료 아닐 경우 1일 1만원 기준으로 지급
 - ※ 현장실습 홈페이지 - 자료실- 현장실습교육과정 숙박비 지원 계획(안) 참조
 - ※ 제외 대상: 휴학생 및 졸업유보생, 현장실습 중도포기자

○ 실습기업(관) 지원

- 학생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액(월**2,236,300**원)이상 지급한 실습기업(관)만 지원 가능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원)
- 학생 실습지원비를 최저금액 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최저금액 100분의 25 지원 가능

□ 기업 주요 사항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 적용) 규정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현장실습생의 실습비(임금)에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불가
-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재보험 가입 의무 부여
-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가입 및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실습생과 협의시 4대보험 가입 가능)